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고 조례안)

- 이 참고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입안 예시입니다.
- 각 기관에서는 행정여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되, 근거 법령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고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시(○○도 또는 ○○군 또는 ○○구, 이하 같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거 법령을 표기해야 합니다.

※ (법령위임 위원회 통합)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유사하여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을 함께 명시합니다.

☞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와 「△△△△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및 △△△△을 위하여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고 조례안)

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자 편의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다시 기재하거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야 할 용어에 대해서는 본 조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상위법령과 달리 용어정의를 하거나 규정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 고충민원 신청의 제한 등)

**제3조(설치)** ○○시에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명칭)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옴부즈만’, ‘호민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에서 명시한 것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면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져 법 집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명칭만 다를 뿐 그 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미 지역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어 명칭 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명칭에 법정 명칭을 병행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호민관(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 제2장 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1조(목적)에서 정한 해당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이 조문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고 조례안)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위원의 자격요건(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임기(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원 수 등 위원회 구성은 고충민원 발생 건수, 민원 발생 분야, 전문인력풀, 인력수급 상황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5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위원의 겸직근무 등),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다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참고 조례안에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임)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고 조례안)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제척·기피·회피 의미

- (제척) 위원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피) 위원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위원을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입니다.
- (회피)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월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 회의 소집, 회의 개최 횟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제12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3조(전문가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 본 장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제39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중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기재하는 것이고,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는 본 장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고 조례안)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증거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제2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4장 사무기구 구성 및 운영

- 제29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예산 지원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회의참석·조사 수당, 여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 소속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예: 「000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을 준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제3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